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메뉴얼





목차

Ι.	매뉴얼의 목적 및 활용	5
	1. 매뉴얼의 개요	6
	2. 지속가능발전 업무 영역	7
Ι.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	11
	1.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12
	1.1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개념화 과정	12
	1.2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적' 발전 의미의 차이	14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15
	2.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15
	2.2 UN SDGs 세부목표들 간의 연계성(Nexus)	17
	2.3 '지방의제21'에서 '지방 SDGs 2030'으로	18
	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9
	3.1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배경과 작성과정	19
	3.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체계와 내용	20
	4.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21
	4.1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의 필요성	21
	4.2 21세기형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방 SDGs	21
	4.3 지방 SDGs 작성의 원칙	22
Ⅱ.	SDGs 이행체계 구축방법	25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제와 지방의 이행방안	26
	2.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홍보	29
	2.1 공무원 대상	30
	2.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상	31
	2.3 주민 대상	32
	3. 제도적 기반	33
	3.1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33
	3.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	33
	3.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4

	35
4. 조직적 기반	36
4.1 SDGs 이행을 위한 행정조직	38
4.2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	
	41
Ⅳ. SDGs 작성 · 이행 · 평가	41
1. SDGs 작성	44
1.1 지속가능발전 현황 진단	45
1.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수립	45
1.3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46
1.4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47
2. SDGs 이행	47
2.1 부서별 이행	48
2.2 민관협력사업의 발굴과 공동 실천	49
3. SDGs 평가	49
3.1 지속가능발전 지표 진단	50
3.2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50
3.3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정·보완······	50
3.4 조례와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53
부록	54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65
2.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6
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I. 매뉴얼의 목적 및 활용



1. 매뉴얼의 개요

매뉴얼의 목적

- 이행 매뉴얼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는 법적 사항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지침 서임.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거나 수행중인 지방정부의 활동을 예시로 서술함으 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려는 지방정부에 추진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원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을 위해 주요 업무 진행 순서에 따라 목표 수립방법을 서술함
- 매뉴얼에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과정은 거버넌스 방식임. 지방정부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함
- 매뉴얼은 지방정부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함
- 그림, 사례 등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개념들과 방법들이 지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예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매뉴얼의 활용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할 때 업무 진행 순서에 맞게 진행하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목표수립은 지방의 여건에 맞추어야 함. 이 단계들은 일정한 논리적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엄밀하게 순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에 제시된 것은 아님. 많은 경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 과정의 기본 요소는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음

2. 지속가능발전 업무 영역

- 본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시를 나타냄
-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업무 영역을 크게 구분하면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작성 · 평가와 본 표의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구 분	지속가능발전 업무	참 조
이행체계	지속가능발전 추진 로드맵 작성	⊪장 1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 설치	⊪장 4.1
구축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장 3.1/부록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협의회 설치	⊪장 3.2/3.3/부록5,6
	지속가능발전 현황 진단	IV장 1.1
기본전략, 추진계획 작성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Ⅳ장 1.2 / 1.3 / 부록 7, 8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IV장 1.4
	지속가능발전지표 진단과 모니터링	Ⅳ장 3.2/부록9
평가와 환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IV장 3.1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정 · 보완	IV장 3.3
	주요 조례와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IV장 3.4

이행체계 구축

단 계	내 용
지속가능발전 추진 로드맵 작성	SDGs 작성, 이행,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구상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 설치	지속가능발전 추진업무에 대한 주무부서의 지정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 구축

기본전략, 추진계획 작성

단 계	내 용
지속가능발전 현황 진단	·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대한 진단과 주민의 참여· 지역사회의 제한적인 자원 여건에 맞는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임
지속가능발전 비전, 목표, 지방기본전략 수립	 비전과 목적: 지역사회의 중점 방향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유도 목표: 정해진 기간 내에 성취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며, 채택된 행동의 적실성과 행동계획의 실행에 따른 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될 수 있음 전략과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서별 사업과 추진 일정, 재정·기한·인적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과업을 포함함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부서별 성과지표의 지침이자 중장기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음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들의 개발이 필요함

평가와 환류

단 계	내 용
지속가능발전지표 진단과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진단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할 영역을 발견할 수 있음 특히 대표지표들의 경우 지역주민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평가 및 목표달성 수준 확인, 그리고 전략과 과제의 이행상황을 담는 보고서임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속가능성 수준을 진단하고, 전략과 과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정 · 보완	 지역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작업임 목표와 전략에 비춰 전략과 과제를 수정 · 보완하는 것으로, 개별 사업을 전환하거나 방식을 바꾸는 일을 포함함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 공동의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임
주요 조례와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지역의 주요 조례나 중장기계획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비춰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검토 과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Ⅱ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



1.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의미

-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될 때, 인디라 간디 당시 인도 수상이 '가난이 최악의 오염'이라는 연설을 하면서 환경과 경제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진행되었음
- 이후 1983년 유엔총회는 '2000년 이후 환경에 관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 on the Environment for the Year 2000 and Beyond)'를 구성하였고, 당시 노르웨이 수상 그로 할렘 브룬트란 트(Gro Harlem Brundtland)가 의장을 맡아 1984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 Development)로 이름을 바꿔 연구를 수행함
- WCED의 연구 결과물이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의장의 이름을 따 '브룬트란 트 보고서'라고 부름)로 발표되었고,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확립함
-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음
- 이를 위해 그간 경제, 사회, 환경 각 부문이 따로 고려되어 왔던 것을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창되었음. 이후 환경이 지탱하는 선에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포용적인 사회 안에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동심원 모델'로 정립·발전되었음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 Our Common Future (UN Brundtland Report, 1987) -



지속가능발전은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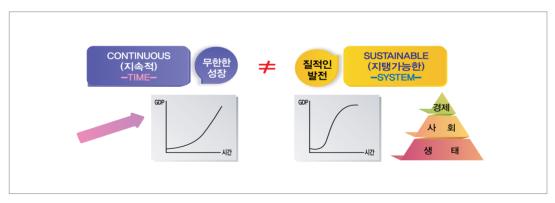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환경과 경제의 양립 가능성을 모색하며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정립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국가 단위의 '의제21(Agenda 21)' 작성, 지방 단위의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작성, 그리고 그 이행을 위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이어졌음
- 2012년 리우+20회의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을 모색하기로 하면서 2015년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17개 목표로 구성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 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었음



1.2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적' 발전 의미의 차이

- '지속가능발전'과 '지속적 발전'은 본질이 전혀 다른 개념임
-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시간적 지속가능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관점에서 생태계가 인간의 사회체계와 경제활동체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 범위의 의미를 담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은 발전을 지속시킨다는 무한 성장의 의미가 아니라 환경이 사회와 경제를 부양하고 지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류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임
- 특히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가 어느 한 영역에서의 처방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관점을 확보해야 하며, 문제 중심의 사고와 문제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것임



자료: 김병완 외, 2019,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35쪽 수정보완.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2.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 2015년 9월 채택된 유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합의문인 「Transforming Our World」 서문에서는 "이 의제는 사람,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자유가 있는 보편적인 평화를 강화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어서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음
- 유엔 SDGs 2030은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음. 169개 세부목 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3개국이 모두 참여한 것이라 17개 목표별로 각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세부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임
- SDGs의 목표연도인 2016부터 2030년까지 각국은 매년 7월 유엔총회에 SDGs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4년에 한 번씩은 각국 정상회담을 통해 이행체계를 점검하기로 되어 있음. 이를 위해 230여 개의 평가지표(Indicators)를 마련하고 있음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가지 목표들

- 2015년 채택한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소위 5개 축(5Ps)을 바탕으로 정립된 것임. 사람, 지구, 번영 축은 사회발전, 경제 개발.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이고. 평화와 파트너십 축은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과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
 - 첫째, 사람 축은 모든 인류가 존엄성과 평등 속에서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킨다는 것임
 - 둘째, 지구 축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행동을 비롯하여 지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 셋째, 번영 축은 모든 인류가 번창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진보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 넷째, 평화 축은 근심과 폭력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한다는 것임
 - 다섯째, 파트너십 축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두면서 모든 국가, 모든 이해당사자, 모든 사람들의 참여로 강화된 지구적 연대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부흥시킴으로써 이 의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한다는 것임



2.2 UN SDGs 세부목표들 간의 연계성(Nexus)

- UN은 SDGs의 1번 목표부터 17번 목표까지 각 목표별 세부목표의 연계가 어떻게 직접·간접적으로 연계되는지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각 목표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부서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17개 목표체계를 활용하여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등 활용법이 중요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립한다면 광역과 기초지자체, 마을 단위에서 목표의 우선순위가 나타날 것이며, 목표의 달성이나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목표 간 연계, 해당 목표와 관련된 부서 간 협력, 나아가 관련 시민사회 영역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임
- 가령 물 문제는 물 관련 목표인 6번 목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표와 영역이 물 문제를 고려하고, 물 목표는 모든 목표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one for all, all for one)



2.3 '지방의제21'에서 '지방 SDGs 2030'으로

-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근거한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수립과 실천이 전 세계의 지방정부 에서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 옴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을 벗어나 구체적인 의미를 담는 17개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성과 임무를 재인식하게 되는 전환점을 부여하게 됨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비교〉

구 분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채택연도	1992년	2015년
회의명칭	유엔환경개발회의	유엔총회(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문서명칭	의제21 (Agenda 2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The 2030 Agenda for SD)
의제구성	Ⅰ. 전문: 1장 Ⅱ. 사회·경제부문: 2~8장 Ⅲ. 자원보전·관리: 9~22장 Ⅳ. 주요그룹의 역할: 23~32장 ① 여성 ② 청소년 ③ 원주민 ④ 민간단체 ⑤ 지방정부 ⑥ 노동조합 ⑦ 산업계 ⑧ 과학계 ⑨ 농촌 Ⅴ. 이행수단: 33~40장	Ⅰ . 서문 : 5P 개요 Ⅱ . 선언 : 머리말, 비전, 공유원칙과 약속, 오늘날 의 세계, 새로운 의제, 이행 수단, 후속조치와 검토, 세계변화를 위한 행동 요구 Ⅲ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 :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0개 지표 Ⅳ .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Ⅴ . 후속조치와 검토 : 국가, 지역, 세계차원
주요그룹	9개 주요 그룹	이해관계자 그룹(MGoS)
지방정부역할	제28장에 지방정부의 역할 명시 (지방의제21 추진 권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구별 없이 모든 지역에서 SDGs 추진 권고
주요특징	ESSD(환경중점) 개념에서 출발하여 지속가 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차원의 실행계 획으로서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의 제시가 없이 추상적 선언의 성격이 강함	MDGs(사회중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서 출발 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와 지표(230여 개) 를 제시하고, 목표달성기한을 2030년으로 제시함

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형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양극화, 미세먼지 등 환경악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국민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모순이 누적되어 왔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여 2018년 12월 확정함
- 유엔 SDGs 수립과정에 준해 민관학 공동 작업반을 운영하고 MGoS 참여 과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K-SDGs 작성과정에는 90여 개 시민사회단체, 192명의 민간전문가, 23개 행정부처가 함께 참여하였음
- K-SDGs는 경제(번영), 사회(사람), 환경(지구환경), 평화, 지구촌 협력(파트너십) 등 SDGs 5개 축과 17개 목표의 틀에 따라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를 2030 국가비전으로 설정한 것임



3.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체계와 내용

■ K-SDGs 2030 목표체계는 다음과 같음



4.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의제21이나 지방의제21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SDGs 목표 수립과 달성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의 중요한 주체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2030 의제 45조에서도 각국은 SDGs를 실행할 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지방 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은 정해진 의제를 지방정부가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SDGs의 지방화(localizing SDGs)를 강조함. 정책결정, 변화의 촉진자, 지구적 목표와 지역사회 연계 고리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임
- SDGs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 국가 및 지자체는 각자 상황에 맞는 SDGs를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2018년 미국의 뉴욕시를 시작으로 영국의 브리스톨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시 등이 'SDGs를 위한 지방 주도의 전환'을 표방하며, '자발적 국가 평가 (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와는 별도로 '자발적 지방 평가 (VLR: Voluntary Local Review)' 보고서를 내고 있음

4.2 21세기형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방 SDGs

- SDGs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이념과 철학을 담고 있으며, 현재 세대가 지향해야 할 숙명적 과제라 할 수 있음
- SDGs가 정치적·상징적 언어로서 총론적 수준의 선언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SDGs 설정은 물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행계획과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도출이 뒤따라야 하며, SDGs의 목표와 지표들이 모든 정책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함
- SDGs는 환경, 경제, 사회 등 행정 각 부문 간 융합적·협업적 정책과제의 도출과 더불어 시민, 기업, 행정 등 주요 주체들 간의 협력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실현 가능함

4.3 지방 SDGs 작성의 원칙

- 원칙 1 : 지역특화형 SDGs 작성
 - UN SDGs 2030, K-SDGs 2030과 연계하여 17개로 구성된 목표체계를 따르되, 세부목표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형" SDGs를 수립

〈예시〉 충남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 에너지 공급 체계와 관련한 송전탑 갈등을 겪은 데다 화력발전소가 신설되기도 한 당진시에서는 7번 목표를 '에너지 정의 실현'으로 설정



- 원칙 2: 주요 중장기계획들과의 연계
 - 도시계획, 종합발전계획, 분야별 계획 등 주요 중장기계획들과 연계하여 정책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작성

〈예시〉 서울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 서울시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제정 또는 개정 때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전검토를 수행

세부평가 항목		평 가	의 견
경제분야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관광, 여행, 비즈니스를 하는데 불편을 초래 할 사항은 없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검토의견) -관광객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적기 개선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우수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우수관광기업을 육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예상
협치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보완의견) -최근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과 같이 주거지역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및 상시적 소통 창구 마련 필요 -공청회 등의 개최로 지역주민과 관광취약계층 등 모두를 배려하는 관광(Tourism for All)실현 방안 강구

- 원칙 3 : SDGs 목표들 간의 연계
 - 환경·사회·경제 분과로 나누는 '칸막이'형 작성을 배제하고, 통합적 ·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유엔의 목표 간 연계성(Nexus) 전략에 따라 작성함

〈예시〉 종로구 마을 단위 목표 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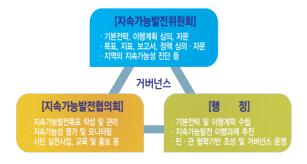
- 종로구는 각 부서가 마을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각 목표와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을 분석 하였음



- 원칙 4: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형 방식에 의한 작성
- 지역의 다양한 주체(행정·시민·기업), 이해관계자 그룹(MGoS) 등이 함께 참여하여 SDGs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협력적 거버년스 방식으로 추진

〈예시〉 수원시 SDGs 민관협력 체계

- 수원시는 행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Ⅲ. SDGs 이행체계 구축방법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제와 지방의 이행방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과 변화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22.1.4)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의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 추진상황의 점검,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 시민 의견의 수렴 및 숙의공론화장의 운영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법 제8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이행하여야 함(법 제9조)

추진상황의 점검,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함
-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법령 제정 · 개정, 관련 행정계획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 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지방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법 제14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하며,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 능성을 평가하여야 함 (법 제15조)
-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 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하며,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함 (법 제16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 원회를 두는데,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음(법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음(법 제22조)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 · 정보를 보급하여야 함 (법 제27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 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법 제28조)

시민 의견의 수렴 및 숙의공론화장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 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음 (법 제29조)
-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법 제29조 제3항)

2.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홍보

-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임
-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일반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계획은 기초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은 모든 부서의 정책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과정이므로 교육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이나 각 분야의 정책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강의를 추가하여, 각 분야의 정책 수립에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공무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협의회 위원을 포함한 시민, 나아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함

	대 상	내 용	비고	
공무원		지속가능발전 이해추진역량 강화	교육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무원 교육커리어 관리	
위원회,협의회, 시민단체		위원의 참여와 모니터링 역할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시민	일반 시민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실천	시민단체를 통한 확산 교육 지원	
기 업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거버넌스 참여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실천	
공		거버넌스의 이해와 참여	공동의 문제 및 협력사업 발굴과 모니터링	

■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참여와 합의이므로 시민과 공무원들이 생각을 교류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1 공무원 대상

교육 목적

- 행정의 21세기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 진행
- 특히 대상별로 교육내용을 달리하여 맞춤형으로 진행

교육 내용

대 상	구 분	내 용
	기본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이해 ·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전 직원	심화	·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지방추진계획의 의의·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지방추진계획의 작성·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성과지표
업무 담당자	기본	· 지속가능발전 목표체계 ·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지방추진계획의 의의
	심화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관리 · 지속가능발전 진단과 모니터링, 평가와 환류
간 부	기본	·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의 필요성
	심화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의 의의

2.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상

교육 목적

-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및 지방추진계획의 심의, 지속가능성 심의 기구인 위원회와 민관협력기구인 협의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교육과 학습의 일상화로 SDGs 실행 플랫폼 기틀을 마련

교육 내용

대 상	구 분	내 용
위원	기본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와 위원의 역할
	심화	 ·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사례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 · 지속가능발전 지표체계와 진단 및 모니터링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과 환류 · 조례와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분과 위원	기본	· 분야별 지속가능성 진단과 모니터링
	심화	·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안 · 분야별 민관협력사업 제안
목표 수립 · 민관 협력 워크숍	기본	· 지속가능발전과 SDGs에 대한 이해 · 지역사회 이슈 탐색과 분석
	심화	· SDGs 수립 워크숍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워크숍 · 민관협력사업 발굴 워크숍

2.3 주민 대상

교육 목적

■ 일반 시민 참여, SDGs 관련 세부 주제의 이해 및 인식 확산 (홍보)

교육 내용

목 적	내 용		
인식확산	 월례 강좌 형식 1일 2시간 지속가능발전과 SDGs에 대한 이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와 국내외 사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여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을 위한 워크숍 참여 		
리더양성	 · 지속가능발전(시민)대학 또는 아카데미 형식 · 6주 내지 10주 정도로 주 1회 2시간씩 · 지역 내 대학과 연계 추진 · 지자체 내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또는 협의체 위원들의 참여 유도 ·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여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을 위한 워크숍 참여 		

3. 제도적 기반

3.1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근거법령: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이유

-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를 지속가능한 지역(시 · 도, 시 · 군 · 구)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조례내용

- 지자체의 행정에 지속가능발전을 포괄적으로 도입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
-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자문기능의 강화

3.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

근거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이유

■ 1992년 리우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을 지방정부 수준에서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설치·운영되어 온 '지방의제21협의회'의 명칭을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을 계기로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해 옴으로써 그 구성·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로 조례를 제정함

34

3.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근거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을 위한 체계 중 심의·자문 기능을 담당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함

조례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지표 작성 및 지속 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에 관한 규정

4. 조직적 기반

-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해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이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참여의 장을 제공함
 - UN에서는 '의제21(Agenda 21)'에 명시되었던 여성, 청소년, 원주민, NGO, 지방정부, 노동조합, 산업체, 과학기술, 농민 등 9개 주요 그룹(9 Major Groups) 외에 민간자선단체, 재단, 교육 및 학술단체, 장애인단체, 자원봉사단체, 노인, 지역공동체, 이주민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이해관계자그룹 'MGoS(Major Groups & other Stakeholders)'라고 표현함
- 행정부서의 역할분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기획부서는 SDGs 추진을 총괄하여 각 부서의 SDGs 수립 및 이행을 독려함
 - 각 부서는 전체 SDGs 목표체계에 따라 부서와 관련된 SDGs를 설정하고 이행함
 - 환경부서는 그간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 경험을 살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기구를 중심으로 SDGs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심의하고, SDGs 지표를 마련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진단, 평가함.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기구는 SDGs 거버넌스의 허브로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워크숍 등의 형태로 시민사회를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제안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추진계획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행을 위한 실천사업을 추진함
-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기구의 구성에서 각 영역과 부문별 조직이나 단체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4.1 SDGs 이행을 위한 행정조직

기반 조성 단계

- 지속가능발전 주무부서는 지자체장 직속의 추진부서, 기획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점과 보완점,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음
- ※ 지속가능발전 논의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국가 단위의 의제21과 지방정부의 지방의제21 주무부서가 환경부서로 시작되었음
-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를 맡더라도 환경부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으며, 기획부서 또는 전담부서가 총괄 역할과 성과관리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해야 함

구 분	장점과 보완점		사례	
SD 전담부서	장점	· 권한과 조직의 위상 · 조직의 이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의지를 실행	서울시 도봉구 충남 당진시	
	보완점	·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영입	경기도 광명시, 화성시	
기획부서	장점	· 타 부서를 통합 ·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 입지 확보	서울시 수원시 순천시	
	보완점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하며, 전담팀 설치 필요		
취거나니	장점	· 기존 지속가능발전관련 업무 추진	광주광역시	
환경부서	보완점	· 지속가능발전 본래의 통합성을 달성하기 어려움	종로구	

이행 및 확산 단계

- 주무부서의 지정,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정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면, SDGs를 수립하고 이를 행정 전 부서가 이행해 가면서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확 산시켜 나가게 됨
- 주무부서는 SDGs의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이행의 기반을 확산해야 하며, 기획부서나 전담부서는 각 부서의 이행을 독려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함께 성 과관리와 지속가능성 평가를 연계함

구 분	환경부서 (주무부서)	기획/전담부서 (총괄 및 평가)	예시
작성	○ (전 부서 참여)	○ (총괄)	서울시 종로구는 기획부서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는 데 기여하였고, 환경부서가 주무부서로서 SDGs를 수립함
이행	(협의회 등	△	수원시는 환경부서와 협의회를 중심으로 작성된
	시민사회단체	(각 부서의	SDGs를 이행하기 위해 기획부서에 전담팀이 이행
	네트워크와 민관협력	이행에	을 총괄하고 있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사업)	대한 독려)	사업을 도출하고 있음
평가	△	(위원회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위원회가 기획부서 내 평가팀과 함께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있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평가와 피드백)	연계와 평가)	환경부서와 함께 환경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음

4.2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

- 지방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의 여건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회의 역할을 구분하여 '양립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위원회 또는 협의회 중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여 역할을 통합한 '단일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위원회와 협의회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양립형'이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규모가 큰 대도시 지역은 '양립형'을, 규모가 작은 소도시나 자치구 및 군지역은 위원회 또는 협의회 중 하나의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단일형'이 현실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방법이라고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임
- 양립형 사례: 충청남도, 수원시, 광명시, 화성시
 - 위원회 주도형 양립형 사례: 서울특별시, 전남 담양군
 - 단일형 사례 (협의회형) : 광주광역시, 충남 당진시
- 단일형 사례 (위원회형) : 서울 도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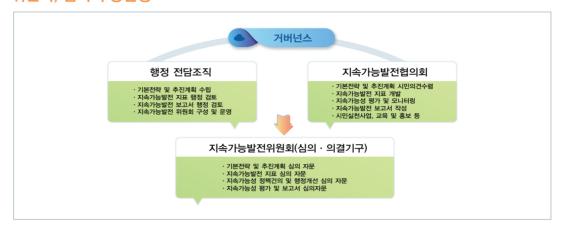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	분	주 요 특 성	
성	격	· 행정부서에서 위원회 간사기능 수행 · 권한과 위상이 높으며, 공식성과 안정성을 갖고, 정책연계성이 강함	
역	할	· SDGs 계획 및 평가보고서 등의 심의·의결, 지속가능발전정책 자문	
활	동	· 연 2~4회 정기회의 중심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운	영	· 행정기관 주도 : 결정사항의 제도적·정책적 구속력 강함	
구	조	·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예	산	· 위원수당, 위원회 회의비 등	
핵심	요소	· 지방자치단체장과 담당공무원의 의지	
보완	보완사항 · 행정기관의 의지에 좌우되거나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제약받을 수 있어서 0 하여 위원회가 형식화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	분	주 요 특 성		
성	격	 · 민관협력기구(개방적 거버넌스형): 지역의 모든 기관·단체 참여가능 · 사무국의 별도 운영 및 예산지원이 이루어짐 · 조직의 연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상향식 실행력이 강함 		
역	할	· SDGs 작성·이행·평가참여, 민관협력 실천사업 수행		
활	동	ㆍ 연중 상시활동 및 실천사업 중심		
운	영	· 민관협치(독립성, 자율성) : 민관협력 허브기능 중심으로 운영		
구	조	· 회장단(상임·공동회장),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실천위원회, 사무국		
예	산	· 실천사업비, 사무국 운영비 등		
· 시민사회의 역량과 참여수준 · 행정기관의 열린자세와 소통노력				
노력이 요구됨 보완사항 · 예산이 행사성(일 · 정책기능을 강화		 ·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사업예산 및 사무국 운영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예산이 행사성(일회성)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협의회 양립형



협의회형



위원회형



IV. SDGs 작성 · 이행 · 평가



■ SDGs의 작성-이행-모니터링 단계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SDGs 작성	지속가능발전 현황 진단	· 분야별 지속가능성 진단 · 공무원과 주민의 지속가능발전 인식 진단 ·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포함한 지역의 시민사회 역량 진단		
	비전, 목표, 지방기본 전략 수립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에 준해 지역의 상황에 맞는 비전, 목 표를 설정하고,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20년 단위 지방기본 전략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 UN과 국가, 광역(기초의 경우)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참조 ·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 지표와 행정 및 거버넌스 등 추진 기 반의 진단 지표		
SDGs 이행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 5년 단위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 부서별 이행, 민관협력사업의 발굴과 공동 실천 ※ 지방추진계획의 세부과제는 별도 계획 과제로 정리 · 지방추진계획의 상황을 2년 마다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 진단	·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 ·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환 방향을 도출하는 근거		
SDGs 평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	·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지방추진계획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를 작성(2년마다 발간)		
	지속가능발전 지방추진계획 수정 · 보완	· 지표와 지속가능발전 진단 결과의 환류를 통해 지방추진계획을 수 정, 보완하고 정책을 전환		
	조례와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 주요 조례의 제·개정이나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지속가능발전 지 방기본전략과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		

■ SDGs의 작성-이행-평가 단계별 각 행정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지방 SDGs 이행업무	행정기관의 역할	관련 기관 · 단체의 협력	
ㅣ. 인식	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무원 교육	·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발전 추진단,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컨설팅단	
전환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시민 교육	· 지속가능발전시민 대학운영		
	1. 지속가능발전 전담/담당부서 지정	· 기획부서 (총괄) · 환경부서 (사업)	SDGs 세부목표별 담당부서	
비. 조직 구성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위촉 · 회의운영	계획심의, 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관련부서 협력	
10	3.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사업예산확보 · 민관협력사업	지역주민조직,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1. 지속가능발전 기본(일반)조례 제정			
Ⅲ. 제도 형성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작성 및 제정 추진	의회의 정치적 지지	
형성	3.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IX SDGs 작성 -	1. 지역 지속가능성 위협요소 진단	· 지방기본전략 작성예산 확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조직,	
	2. 목표/세부목표/정책과제 도출	· (숙의공론회장) 원탁토론, 회의, 워크숍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3. 지표/목표치(2025,2030) 도출	· 관련 부서의견 수렴		
\	1. 지방기본전략 수립	· 20년단위 계획 수립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V. SDGs 이행	2. 지방추진계획 수립	· 5년 단위 부서별 지방추진계획 작성		
	3. 부서별 지표관련사업 집행	· 부서별 사업추진 상황 점검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	
VI.	1.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2년 주기)	·기획부서 책임 하에 총괄추진	지속기능발전위원회, 지속기능발전협의회	
SDGs 평가	2. 지표/목표치/관련정책의 수정보완	·지표관련 담당부서별 통계 자료 제출	시속가능일선엽의회 (작성·자문에 전문가참여)	

1. SDGs 작성

1.1 지속가능발전 현황 진단

- 지속가능발전 현황 진단은 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지역 내 주요 계획 검토,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인식 진단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일반현황 분석은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위치 및 지형특성
- 토지이용 및 행정구역 현황
- 인구현황
- 경제현황
- 사회현황
- 환경현황
- 행정현황
- 지역 내 주요 계획 검토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지자체 주요 중장기계획
- 지자체 주요 비전계획
- 지속가능발전 인식 진단은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대한 평가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현황에 대한 인식
-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인식
-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 17개 목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1.2 지속가능발전 비전, 목표,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 지속기능발전 비전과 목표 및 세부목표(전략) 수립은 지속기능발전위원회와 협의회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 그룹 (MGoS)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숙의공론화장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함.
- 추후 이행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때 지역 단위의 이해관계자그룹(MGoS)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숙의공론화장 방식으로 비전과 목표 및 세부목표(전략)를 수립함.
- 이 과정에서 행정 내부 워크숍과 주민 워크숍을 병행하거나 공동 워크숍을 수행하며, 상호 의견을 보완할 수 있음
- 추진 계획은 이해관계자그룹(MGoS)에서 설정한 목표와의 정합성을 토대로 관련 행정부서에 논의를 통해 수립하여야 함

1.3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작성할 수 있음

지방추진계획 수립 주체 구성 및 교육	→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전략 수립의 목적, 과정, 산출물 등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협의회 위원 및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 전 행정부서에 대한 교육
지방추진계획 가이드라인 작성	-	· 작성된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전략별 지방추진계획과제들을 도출한 후 각 부서의 업무를 지방추진계획과제에 배치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 · 지방추진계획의 요건, 통합 조정 방안 제시
지방추진계획 초안 수립 및 수정 보완	→	· 행정 부서의 팀장들이 자신의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포함되어야 할 전략을 선택 · 각 전략 별로 취합된 업무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이행과제로 묶어서 지방추진계획 작성
성과지표 작성	→	· 각 부서 지방추진계획, 성과지표 작성 · 각 이행과제의 단위 사업별로 성과지표들을 설정하고 적합성을 검토
지방추진계획 확정	-	· 지방추진계획의 구조를 만든 후 각각의 지방추진계획과 단위 과제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켜야할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정리해 이후 지방추진계획의 논의의 기준이 되도록 정리 · 지자체장 공포 후 차년도 사업 확정

자료: 김병완(2017). "지방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계방안", 42.

1.4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지속가능발전 견인을 위한 나침반 또는 등대
 - 행정의 혁신과 관리의 수단
 - 수평적 소통을 통한 융복합 행정을 촉진할 수단
 - 행정 내부와 지역주민과의 소통 수단
 - 행정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시 고려하거나 배제해야 할 요인은 다음과 같음

고려 요인	배제 요인
 국제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통계자료나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한 지표 지속가능성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지표 단순 명료하며 평가와 해석이 용이한 지표 지역 수준에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한 지표 	 · 지역의 상황이나 노력과 관계없는 지표 · 단순히 기반시설만을 나타내는 지표 ·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려운 지표 ·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지표 · 지속가능성과 관계가 없는 단순한 발전지표 · 평가과정이 복잡한 지표

2. SDGs 이행

2.1 부서별 이행

- 지속가능발전 지방추진계획의 부서별 이행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의의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유도 되어야 함
- 지속가능발전 추진 초기에는 직접적인 평가보다는 부서별 협업과 민관협력사업을 촉진하며, 지자체 차원의 우수사례 발표 또는 경진대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관리 요소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관리 요소	내 용	관리 방법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반영	부서 업무의 지속가능 발전 가치 포함	부서 업무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기반으로서의 의의를 작성, 공유
부서 간 협력	칸막이 행정 극복과 유연성 확보	부서 간 협의와 공동사업을 유도 (부서 또는 부서장 평가시 가점 부여)
지속가능발전 이행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수와 역량강화 워크숍	공무원 대상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례화, 문제해결형 워크숍 진행
부서별 사업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대한 기여	부서별 업무의 목표와 지표 개선에 대한 기여 정도	민관협력사업 발굴과 공동 추진을 위한 공동 워크숍 추진
성과지표	부서별 업무의 성과지표 달성 정도	부서 업무 중 이행계획으로 제출된 업무의 성과지표에 가점 부여

2.2 민관협력사업의 발굴과 공동 실천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행정과 지역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달성과 개선에 기여할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실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함께 협의회,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이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 (MGoS)이 모여 논의하는 원탁토론회 형식의 워크숍을 진행
- 민관협력사업 발굴 외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나 지표 달성 또는 개선을 위해 각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단체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도 논의
- 워크숍은 2-3시간 정도로 진행하며, 워크숍 이후에는 행정에서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참여자들이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수정 작성시 민관협력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기록

시 간	내 용	
30분	[접수] 원탁회의 참석자 & 토론진행자	
1시간	[개회식 및 기조발제] - 국민의례 및 참가자 소개 - 인사말씀 - 기조발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 발제)	
1-2시간	[분과별 토론 진행] "함께 이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s와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검토하면서 분과별로 민관협력사업 또는 민간실천사업을 논의	
1-2시간	[공유 및 결과모음] 종합정리(결과 나누기) 및 폐회	

3. SDGs 평가

3.1 지속가능발전 지표 진단

■ 지속가능발전 지표 진단과 보고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뤄질 수 있음

지표진단계획 수립 ' 기간 : 보고서 발간 시기 결정 (대부분 2년 주기로 평가) · 방식 : 외부 용역과 내부 작성 방식 결정 · 절차 : 협의, 검토, 의결 통계자료 취합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 ' · 지표정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출처와 산출방식에 따라 측정값 산출 통계 자료 분석 · 수정 ' · 지표 목적 대비 효과성 분석 · 시사점 제시 이행과제별 지표 진단 ' · 이행과제별 관련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석 · 이행과제의 정책목표 대비 효과성 진단 · 시사점 제시 지표진단 결과 검토의견 제시 ' · 지표진단 결과 개선되는 지표와 악화되는 지표 검토 · 지표진단 결과 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 · 시사점 제시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별 지표진단 결과 심의확정 · 보고서 수록 내용의 적정성 검토 · 보고서 여 성식 검토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 - 통계자료의 신뢰성, 객관성, 일관성 유지 - 지표정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출처와 산출방식에 따라 측정값 산출 - 통계자료 본석·수정 - 지표 추세 분석 -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 - 지표 목적 대비 효과성 분석 - 시사점 제시 - 이행과제별 지표 진단 - 이행과제별 관련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석 - 이행과제의 정책목표 대비 효과성 진단 - 시사점 제시 - 지표진단 결과 개선되는 지표와 악화되는 지표 검토 - 지표진단 결과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 - 시사점 제시 - 지표진단 결과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 - 시사점 제시 - 보고서 초안검토 - 보고서 형식 검토 - 보고서 형식 검토 - 보고서 영식 검토 - 기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 결과 채택 후	. ——	· 방식 : 외부 용역과 내부 작성 방식 결정
등계 사료 분석·수정 - ·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 - · 지표 목적 대비 효과성 분석 - · 시사점 제시 이행과제별 지표 진단 - · 이행과제의 정책목표 대비 효과성 진단 - · 시사점 제시 지표진단 결과 검토의견 제시 - · 지표진단 결과 개선되는 지표와 악화되는 지표 검토 - · 지표진단 결과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 - · 시사점 제시 보고서 초안검토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별 지표진단 결과 심의확정 - · 보고서 수록 내용의 적정성 검토 - · 보고서 형식 검토 나고서에 수록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 결과 채택 후	(지속가능발전	· 통계자료의 신뢰성, 객관성, 일관성 유지
지표 진단 ▼ · 이행과제의 정책목표 대비 효과성 진단 · 시사점 제시 지표진단 결과 검토의견 제시 ▼ · 지표진단 결과 개선되는 지표와 악화되는 지표 검토 · 지표진단 결과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 · 시사점 제시 보고서 초안검토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별 지표진단 결과 심의확정 · 보고서 수록 내용의 적정성 검토 · 보고서 형식 검토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 결과 채택 후		·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 · 지표 목적 대비 효과성 분석
· 지표진단 결과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 · 시사점 제시 보고서 초안검토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별 지표진단 결과 심의확정 · 보고서 수록 내용의 적정성 검토 · 보고서 형식 검토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 결과 채택 후		· 이행과제의 정책목표 대비 효과성 진단
・보고서 수록 내용의 적정성 검토 ・보고서 형식 검토 ・보고서 형식 검토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 결과 채택 후		· 지표진단 결과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
	보고서 초안검토 ▼	· 보고서 수록 내용의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수록	

3.2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각 영역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지역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진단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환의 방향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통계자료 취합 이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차원의 풍부한 해석이 필요하며, 지표의 목표치가 있다면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새롭게 필요성이 드러난 지표를 발굴 · 추가하거나 목표 달성이나 여건 변화로 지표의 의의가 사라진 지표를 삭제 · 수정할 수 있음

3.3 지속가능발전 지방추진계획 수정 · 보완

- 부서별 지속가능발전 지방추진계획에 대한 진단은 성과관리 차원에서 수행여부를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지표 진단 결과와 면밀히 연계하여 판단함
- 개선된 지표와 악화된 지표에 비춰 이행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음
- 지속가능가능발전위원회는 부서별 과제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여부보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발전 지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정, 보완점을 제시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민관협력사업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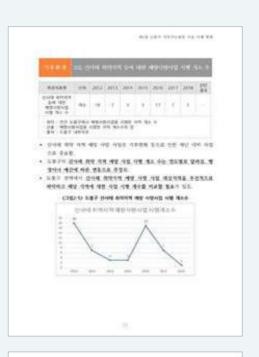
3.4 조례와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 지속가능발전 지표 진단이나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과는 별개로 지역 내 제반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시, 그리고 지자체의 주요 중장기계획을 작성할 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충되는 점을 발견 하여 보완할 수 있게 함
- 상위 계획 또는 상급 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아니라 조례나 계획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안임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 추세에 비춰 이에 기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임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19. 6.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 사회 ·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 ·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

장을 촉진하다.

-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 · 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기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3. 지속가능한 생산 · 소비 및 도시 · 주거에 관한 사항
- 4. 빈곤퇴치, 건강 · 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 7. 생태계 보전과 국토 · 물 관리에 관한 사항
- 8. 지속가능한 농수산 · 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 9. 국제협력 및 인권 · 정의 · 평화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 · 사회 · 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 ·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

- 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1. 국가기본전략
-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기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시 · 도지사는 시 · 군 · 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 · 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 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 ·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 · 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시·군·구의 장은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군·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군·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기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 정·보완하여야 한다.

-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 · 보 위하여야 한다
-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 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 · 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회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기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 ·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 ·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 ·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

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 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 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 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 1. 지속가능발전 전략
-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 3. 포용적 사회
- 4. 생태 ·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 5. 이해관계자 협력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 · 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 ⑧ 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 · 조정에 관한 사항
-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 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11. 제28조에 따른 교육 ·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 · 조정에 관한 사항
-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 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0. 제28조에 따른 교육 ·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 · 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임금·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 · 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⑥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 도로 · 항만 · 상하수도 · 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 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수 있다.
-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적·운영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 · 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 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 전연구센터의 지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 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 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 · 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 · 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대표성·책임성·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 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1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 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708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 은 폐지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

[시행일: 2022. 3. 25.] 제3조

제4조(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

2.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 선진국-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는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30개의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슬로건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목표	세 부목 표		지 표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집단여부별)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 복지 급여(소득보장) 예산 및 GDP 대비 비율
1.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 의료비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빈곤층	1-2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 고용보험 가입률
감소와 사회		달성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안전망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	·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
강화	1 3	한다.	·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 긴급복지 예산 =긴급복지지원금+일자리사업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비중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농가소득
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2. 식량	2-3	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안보 및 지소			·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
지속 기능한 농업 강화			· 밭토양 산도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유전자원 점수
	2-4	종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다양성을 유지하고 신품종을 개발한다.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동물유전자원 점수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량 접근성을 보장한다.	·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

목표	세 부목 표		지 표
古 井		세 구속 표	·
			·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30~70세)
	3-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 당뇨병 조절률
		인한 사망률(30~70세)	· 성인 흡연율
			·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0.0		·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 인구 1천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3.	2.4	가여버이 에바기 지기로 이런 나 걱정도!	· 인구 십만 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
_{0.} 건강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인구 십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하고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출생아 십만명당 모성사망자 수
행 복 한 삶	3-6	아동 ·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출생아 1천 명당 신생아 사망률
보장			·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 아동 · 청소년 비만 유병률
	3-7	기후 ·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 인구가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
			·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 영아시망률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 · 관리율
			·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3-9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 보장을 달성한다.	·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수
4.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 취학률
모두를 위한	4–1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	·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2~6수준 학생비율)
양질의 교육		록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 국기수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 (well- 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	·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에 대비한다.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	· 고등교육 이수율
	4–3	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 과정 참여율
		디지털화, 기술변화에 따라 취업, 양질의 일	· 평생학습 참여율(%)
4.	4–4	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 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 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 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 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 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활용 기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 성인 문해율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인권,	·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4-7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확산, 세계시민의 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	·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	한 문화의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학교 내진보강률
		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Wee 클래스 설치 비율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교사 1인당 학생 수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4 10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 초 · 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5. 성평등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 맞벌이가구 여성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보장			· 민간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 성·재생산권과 건강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부
	5-5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 피임실천율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	·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5-0	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회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 고 증진한다.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의견 수용률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 한다.	· 수돗물 만족도
			·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 농어촌 히수도 보급률
	6–2	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수립 개소수
			· 유역별 물순환율
	6–3	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을 담보한다.	· 수질목표기준 달성도 (TOC 기준)
6. 건강		,	·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
하고 안전한			· 상수도 누수율
물관리	6–4	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 적으로 사용한다.	· 지방상수도 지급률
			·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확대한다.	·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 (HRI)
	6-5		· 어류건강성 평가지수 (FAI)
			· 습지와 습지보호지역 면적 증감
	6-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 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 물 관련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
			· 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 반영 비율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수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 한다.	· 신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 1차 에너지 대비 신 · 재생에너지 비중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	· 국가에너지효율지표
소비	, 3	시킨다.	· 건물에너지효율지표
	7–4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 친환경차 확대 수
	/ 4	최소화 한다.	·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 인구집단별 고용율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8.	8–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업자 수
좋은		중소기급 및 소장하는의 장정을 복진한다.	· 창업기업 수
일자리 확대와 경제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남녀 임금격차
성장	8–5	이주노동자, 연소근로자 등 취약그룹	·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0-0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다.	·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9_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 사고사망만인율
	8–6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전체 재해율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사회기반 구축	9–1	대다수 국민에게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도로 보급률
			· 일반국민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9–2		·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 산업집중도
	0.0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혁신역량부문 10개 지표의 점수
	9–3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 세계혁신지수(GII)의 종합점수 또는 혁신 산출점수
	0.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 GDP 대비 연구개발비
	9–4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 에 기여한다.	· 경제활동 1천 명당 (전일제) 연구자 수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0	중에 시원요활성이 높는 신입외을 구구 한다.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 전체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 대비 소득 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비율
		유지한다.	· 소득격차비율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 소득 5분위 배율
	10-2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 성을 확대한다	·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10.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 인구집단별 고용률
모든	10-3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장애인의무고용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 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 이주민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적극적 수용
	10-5	내 · 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 환경을 조성한다.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11. 포용적 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민/다문화 교육 이수시간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1-1		·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및 재정 집행액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11-2		· 저상버스보급률
			· 자전거 수단분담률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역량을 강화한다.	·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11-4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	·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
주거지 조성	11-4	을 강화한다.	· 세계문화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	·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 실종인구
		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 · · · · · · · · · · · · · · · · · ·	·

			· 미세먼지 나쁨일수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Tㅇㄱ만 단ㅇㅇㅎㄹ ㅁㅗ시만되.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1–7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 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40.0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	· 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
	12-2	적으로 사용한다.	· 물질흐름통계(MFA) 구축 대상 자원수
		식품의 생산 · 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 식품	· 식품 손실 지수
	12-3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 을 감소시킨다.	·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율
12.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12-4		·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
			·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 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지원 을 확대한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12-0		· 녹색경영 참여 기업 수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녹색제품 구매율
			·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12-8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12 0		·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12.0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플라스틱의 재활	·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12-9	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12-10	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 지속가능관광의 참여자수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 방재시설 집행 비율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비율
13.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방 정책 등에 반영 하도록 노력한다.	· 기후 · 에너지 전담기관 설치 지자체 비율
기후		이보기 보기단기.	·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파트너십 운영 지자체 비율
변화와	10.0	기층변형 대의에 고향 여러의 가형하다	·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 이행 비율
대응	13–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수질평가 지수값(WQI)을 이용한 생태기반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오선들 귀한 선디제계를 확답한다.	· 해양쓰레기 수거량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	· 갯벌복원면적
	14-2	극적으로 관리한다.	·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14. 해양 생태계 보전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 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 외해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 · 8.2) 유지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비율 확대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 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44 -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14–7	이전을 확대한다.	· 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이전 건수
			·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분야 무상원조 규모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 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
	14-9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이용을 강화한다.	· 관련 협약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진행율

15-1 된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15-3 기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 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		15-1		
15-2 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 ·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4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4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고 멸종위기종을 가산악지역녹색피복지수 - 종보호지수 (Species Protection Index) - 전국 아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 아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보선과 목원 활동을 활성화한나	·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15-3 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별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 주요멸종위기종 복원율 - 산약지역녹색피복지수 - 종보호지수 (Species Protection Index) -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15-2		·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15. 유상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15-4 보호한다. - 주요멸종위기종 복원율 - 산악지역녹색피복지수 - 종보호지수 (Species Protection Index) -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15–3		·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15. 육상 생태계 보전 15-4 무호한다.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15. 육상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 종보호지수 (Species Protection Index) 보전 ·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 아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육상 생태계			· 주요멸종위기종 복원율
용상 생태계 보전		15-4		· 산악지역녹색피복지수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 종보호지수 (Species Protection Index)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15-5 이상생물과 인간 사이 접촉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생물 밀거래를 근절한다. · 관리제도가 필요한 야생동물 · 가축 · 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가확립된 접촉점 수의 비율		15-5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가확립된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이들이 육 · 외래생물 관리 대상 종수 15-6 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		15-6		·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수
기 위한조치를 취한다. · 산림병해충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		10 0		· 산림병해충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단절된 생태축 ·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15-7 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 · 관리를		15–7		·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위해 노력한다. · 도심/생활권 복원		15–7		· 도심/생활권 복원

16. 평화 정의 포용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 범죄율(살인, 강도, 폭력, 성범죄)
10-1	을 대폭 감소시킨다.	· 학교폭력피해 경험
10.0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	· 아동학대피해아동 발견수
16-2	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 실종아동 미발견건수
16-3	국내 · 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다.	· 법률 구조 건수 증감률
16. 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 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범죄은닉자산 환수보전 평균액
16-4		· 마약범죄건수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 부패경험지수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 정부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존재 여부
10.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 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
16–9		· 기본적 자유 침해 경험 비율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 화한다.	· ODA 중 개도국 내 폭력 예방 및 테러 · 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역량강화 지원 비중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10-11	시행한다.	· 치별 경험 비율
10. 10		·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16–12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디지털정보격차 감소율

	17–1	ODA를 확대하고 개발재원을 다양화한다.	· ODA/GNI 비율(%)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 개발도상국과의 교역비중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규모
17. 지구촌 협력 강화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 한다.	·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내용이 포함된 ODA 전략 · 정책 건수
	17–4	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 신남방, 신북방 등과 같은 주요 대외 정책과 연계된 ODA 사업 비율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 한다.	· PCSD 원칙의 전략적 · 입법적 명시, SDG 목표와 국가예산의 연계, SDG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기구 등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여부
			· 전년 대비 개선된 K-SDGs 지표 비율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다자간 국제협력협의체 운영 및 다자간 협력대화 건수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씨느니ㅂ줄 건경이고 속간인니.	· ODA 민관협력 재원의 비율